<bof>

1. [%1](#1 손금불산입)(#2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항목)(#3 Items not treated as expenses)[n]
   1. [1](#1 손금불산입 의의)(#2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항목의 의미)(#3 Meaning of item not treated as an expense)[n]
      1. {1}(#1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손금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법법§20∼§28).)(#2 회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이 줄어들면, 비용이 생기는 거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모든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If a company's total assets minus total liabilities decrease, it can be said that a transaction resulting in an expense has occurred. However, not all expenses may be recognized under the law..){r%3-1<n>,r%4-1<n>,r%4-2<n>,r%4-3<n>,r%4-4<n>,r%4-5<n>,r%4-6<n>,r%5-1<n>,r%5-2<n>,r%6-1<n>,r%6-2<n>,r%7-1<n>,r%8-1<n>,r%9-1<n>,r%10-1<n>}
   2. [%2](#1 손금불산입 유형)(#2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항목의 유형)(#3 Type of item not treated as an expense)[n]
      1. [%3](#1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법§20))(#2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거래 등으로 발생한 비용의 불인정)(#3 Disallowance of expenses incurred due to transactions in stocks or equity interests) [n]
         1. [1] (#1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유형)(#2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가 아닌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거래 등으로 인해 비용처리 하지 않는 유형)(#3 Type of disallowance of expenses due to transactions of stocks or equity interests that are not profit or loss transactions that generate revenue or expenses)[T,e2<n>,r%1-1<n>]
            1. {1}(#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2 =회사가 남은 잉여금의 처분을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3 =The amount by which the company expensed the disposal of the remaining surplus){n}
            2. {2}(#1 =주식할인발행차금)(#2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게 판매하여 발생한 금액)(#3 =Amount generated by selling stock for less than par value){n}
         2. [2](#1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의미)(#2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게 판매하여 발생한 금액의 의미)(#3 Meaning of the amount of money generated by selling stock for less than par value)[n]
            1. {1}(#1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회사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미달하게 발행하는 경우의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상법§417).)(#2 주식의 액면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경우의 그 손해분과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만들어진 후 2년이 지나고 회사 주주들의 특별한 동의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상법§417).)(#3 It refers to the sum of the losses incurred by selling shares at less than the par value and the cost of issuing new shares. However, this requires the special consent of the company's shareholders and the permission of the court after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mpany was created. (Commercial Code§417).){e1<n>}
      2. [%4](#1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법§21))(#2 세금 및 공과금의 비용 불인정(법법§21))(#3 Disallowance of expenses for taxes and utilities (Act §21))[n]
         1. [1](#1 법인세 등)(#2 법인세 등)(#3 Corporate taxes, etc)[n]
            1. {1}(#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합니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2 매년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지불할 회사의 세금과 지방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3 Company taxes and local taxes paid or payable on profits generated each year.){r%1-1<n>}
         2. [2](#1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2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세금 등)(#3 Taxes incurred by not fulfilling obligations)[n]
            1. {1}(#1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합니다.) 이 때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본세와 가산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액도 포함합니다)(#2 법에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세금(늦게 내서 추가로 내는 세금도 포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력을 고용할 때 내야하는 세금(원천세)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에 포함되어있는 세금도 포함됩니다.)(#3 Taxes paid or payable due to non-compliance with obligations stipulated by law (including additional taxes paid late). This includes taxes you have to pay when you hire people (withholding taxes), and taxes that are included in the price when you buy goods or services.){r%1-1<n>}
         3. [3](#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2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에 포함되어있는 세금)(#3 Tax included in the price when you buy a good or service)[n]
            1. {1} (#1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법령§2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합니다.))(#2 사업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에 포함되어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회사 입장에서 돌려받을 돈이기에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3 Taxes included in the price when purchasing goods or services from a business. These taxes are not treated as expenses because they are money that the company will get back.){r%1-1<n>}
         4. [4](#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무상 처리방법))(#2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에 포함되어있는 세금의 처리방법))(#3 $(Taxes that are included in the price when buying goods or services))[n]

{1}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r%1-1<n>,e3<n>}

* + - 1. [5](#1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2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납부하지 않은 금액)(#3 Amount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or state tax not paid)[n]
         1. {1}(#1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으로서 제품가격에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2 개별소비세나 주세는 물건을 내보내거나 수입 신고를 할 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물건을 내보냈는데 아직 팔지 않았다면, 그 물건에 대한 개별소비세나 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세금만큼 물건 가격을 높인 경우는 제외합니다.)(#3 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state taxes are taxes that you have to pay when exporting or declaring income. If you've exported an item and haven't sold it yet, you don't have to pay individual consumption tax or state tax on it. It can't be treated as an expense, unless you increased the price of the item to cover the taxes.){n}
      2. [6](#1 벌금·과료·과태료)(#2 벌금·과료·과태료)(#3 Penalty, fines, surcharges)[n]
         1. [6x1](#1 손금불산입 대상 벌금 등)(#2 비용처리 되지 않는 벌금 등)(#3 Fines, etc. not treated as an expense)[n]

{1}(#1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포함)･과태료(과료와 과태금 포함)･가산금과 강제징수비)(#2 회사가 어떤 규칙이나 법을 어겨서 내게 되는 벌금,과태료 및 기한보다 늦게 내서 추가로 내는 금액과 강제로 징수할 때 발생하는 금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3 Fines, penalties, and surcharges incurred by the company for violating any rule or law, and surcharges incurred for late payment and forced collection are not treated as expenses of the company.){r%1-1<n>,e6x2<n>}

* + - * 1. [6x2](#1 벌금·가산금 등에서 제외되는 항목)(#2 벌금 등에서 제외되는 항목)(#3 Items excluded from fines and penalties)[n]

{1}(#1 “벌금･가산금 등”에는 사인간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구상권행사 가능한 것 제외합니다.), 산재보험료의 납부지연 연체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 개인 간의 계약 중 계약상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징수하는것을 것(다만, 구상권행사 가능한 것은 제외합니다.), 산재보험료의 납부지연 연체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3 If a contract between individuals fails to be fulfilled within the contractual deadline, it shall be collected in the nature of damages (however, the right of recourse is excluded), but the late payment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remiums is not applicable.){r%1-1<n>,e6x1<n>}

* + - 1. [7](#1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2 비용처리 되지 않는 공과금)(#3 Utilities not treated as an expense)[n]
         1. [7x1](#1 의무적 납부가 아닌 공과금)(#2 의무적 내야 하는것이 아닌 공과금)(#3 Utility not mandatory to pay)[n]

{1}(#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으로서 “공과금”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2 공과금 중 법에 따라 반드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If a utility bill is not mandatory to pay under the law, it is not recognized as an expense.){r%1-1<n>,e7x2<n>}

* + - * 1. [7x2](#1 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납부하는 공과금)(#2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납부하는 공과금)(#3 Utilities paid for failure to comply with an obligation)[n]

{1}(#1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2 법을 어기거나 금지된 행동을 하게 될 때 부과되는 공과금입니다.)(#3 Utility fee imposed for breaking a law or engaging in a prohibited behavior.){r%1-1<n>,e7x1<n>}

* + - 1. [8](#1 연결법인세액)(#2 자회사가 모회사에 납부한 세금)(#3 Taxes paid by a subsidiary to its parent company) [n]
         1. {1}(#1 연결모법인에 법인세법§76의19②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2 모회와가 자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아 이익을 합계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때 자회사가 자기 회사분의 세금을 모회사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3 There is a system in which a parent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are considered as one company and report and pay taxes on their combined profits. In this case, the subsidiary pays its share of tax to the parent company, and this amount is not expensed.){r%1-1<n>}
    1. [%5](#1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법§21의2))(#2 제재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비용 불인정)(#3 Disallowance of expenses for damages for sanction purposes)[n]
       1. [1](#1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의의)(#2 제재 목적의 손해배상금의 뜻)(#3 Meaning of damages for sanction purposes)[n]
          1. {1}(#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3①(1)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2 회사가 한국이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때, 실제로 생긴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그 초과된 금액은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않습니다.)(#3 When a company is required to pay damages in accordance with a law in Korea or a foreign country, the excess amount cannot be treated as an expense because it is for the purpose of imposing sanctions.){r%1-1<n>,e2<n>,e3<n>}
       2. [2](#1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2 실제 발생한 손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3 When the actual damages incurred are unclear)[n]
          1. {1}(#1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2/3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 23조 2항))(#2 실제 손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2/3를 곱한 금액을 비용에서 제외 합니다)(#3 If the amount of actual damages is unclear, the amount multiplied by 2/3 of the damages paid shall be excluded from expenses){e1<n>,e3<n>}
       3. [3](#1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2 제재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3 When to apply the rule on damages for sanctions)[n]
          1. {1}(#1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2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3 Applies to fiscal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18.){e1<n>,e2<n>}
    2. [%6](#1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2 자산의 가치 하락분의 비용 불인정)(#3 Disallowance of expenses for decrease in value of assets)[n]
       1. [1](#1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대상)(#2 가치 하락분의 비용 불인정 대상)(#3 Decrease in value is not deductible)[n]
          1. [1x1](#1 평가손실 손금불산입 대상 규정)(#2 가치 하락분의 비용 불인정 대상 규정)(#3 Rules for disallowance of depreciation)[n]

{1}(#1 법인세법§42② 및 ③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손)(#2 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산의 가치 하락분)(#3 Decrease in value of assets not prescribed by law){r%1-1<n>,e2<n>,e1x2<n>}

* + - * 1. [1x2](#1 시가 및 감정가액 등으로 감액한 경우)(#2 시장가격 및 감정가격 등으로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3 Decrease in value from market value and appraised value)[n]

{1}(#1 손금불산입대상 자산의 평가손실은 법법§42② 및 ③의 평가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손실을 말하므로 주식 등 유가증권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2 비용처리 되지 않는 자산의 하락분은 법에 따라 평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나 형태가 없는 자산 등을 감정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장부금액을 낮춘 경우라 하더라도에도 이러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3 A decline in an asset that is not expensed means that it has not been val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refore, even if stocks or securities are valued at market prices or the carrying amount of tangible or intangible assets is reduced by an appraisal by an appraisal expert, such expenses are not recognized.){r%1-1<n>,e2<n>,e1x1<n>}

* + - 1. [2](#1 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손실 가능)(#2 법에 해당하는 경우 가치 하락분 비용처리 가능)(#3 Decrease in value can be expensed if it falls within the prescribed reasons of the law)[n]
         1. [2x1](#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파손·멸실된 경우의 평가손실 인정)(#2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파괴되거나 손상된 경우의 가치 하락분 비용 인정)(#3 Recognize cost of decrease in value if destroyed or damaged due to natural disaster, etc.)[n]

{1}(#1 유형자산이 천재･지변･화재･수용,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손실은 특별히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령§78))(#2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 자연재해, 화재, 수용, 폐광 등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산을 한 해가 종료되는 날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장부가격과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If an asset in physical form is damaged or destroyed due to natural disaster, fire, expropriation, or abandonme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value of the asset and its book value can be calculated by valuing the asset at the market price on the day the year ends. They be specifically recognized as an expense only in these cases.){ e1<n>,e2x2<n>}

* + - * 1. [2x2](#1 광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사례)(#2 광업용으로 쓰이는 자산의 가치 하락분 사례)(#3 Example of depreciation of assets used for mining)[n]

{1}(#1 동일 광구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광업용고정자산의 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없으나(기본통칙 22－0…1 ②), 광업용 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함)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로 보아 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2 만약 같은 광산 구역 내의 일부 터널이 폐쇄되더라도, 광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치 하락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업에 사용되는 자산(토지 포함)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상 또는 파괴”된 경우로 보아 그 가치 하락금액을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3 If some tunnels in the same mining area are closed, the diminution in value of the assets used for mining is not recognized. However, if the assets used for mining (including land) cannot be used for their intended purpose, the amount of the diminution in value is considered "damaged or destroyed" and can be expensed.){e1<n>,e2x1<n>}

* + 1. [%7](#1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법§26))(#2 과다하게 지출한 경비 등의 비용 불인정(법법§26))(#3 Disallowance of expenses such as excessive expenses (Act §26))[n]
       1. [1] (#1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유형)(#2 과다하게 지출한 경비 등의 비용 불인정 유형)(#3 Type of disallowed expenses such as excessive expenses)[T,r%1-1<n>]
          1. {1}(#1 =법령§43 규정의 상여금, 법령§44 규정의 퇴직급여 및 법령§44의2 규정의 퇴직보험료 등)(#2 =상여금, 퇴직급여 및 퇴직보험료 등으로써 법에 규정된 기준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3 =Bonuses, retirement benefits, and retirement insurance premiums paid in excess of the standards prescribed by law) {n}
          2. {2}(#1 =법령§45에서 규정하는 비용외의 복리후생비)(#2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복지 비용)(#3 =Welfare expens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the law){n}
          3. {3}(#1 =법령§46 규정의 여비･교육훈련비)(#2 =법에서 규정한 여비･교육훈련비)(#3 =Travel and education expenses as stipulated in the law){n}
          4. {4}(#1 =법령§48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공동경비)(#2 =법의 규정되어있는 분담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공동 부담 비용)(#3 =Shared expenses in excess of the amount prescribed by the law){n}
    2. [%8](#1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법§27))(#2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불인정)(#3 Disallowance of expenses unrelated to business)[n]
       1. [1] (#1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유형)(#2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유형)(#3 Types of non-work-related expenses)[n]
          1. [2](#1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하는 비용 등)(#2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구매하거나 관리하는 비용 등)(#3 Costs of purchasing or managing assets unrelated to business)[n]

{1}(#1 법령§49 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2 법에 열거되어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구입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유지비, 수리비 및 그와 관련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3 Costs incurred by purchasing and managing assets not related to business listed in the law, maintenance costs, repair costs, and expenses related thereto are not recognized.){r%1-1<n>,e(3<n>,4<n>,5<n>)}

* + - * 1. [3](#1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2 회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3 Maintenance, management, and usage fees for assets not directly used by the corporation)[n]

{1}(#1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2 회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나 건물, 물건 등에 대한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사용료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소수 지분을 가진 임원 및 일반 직원들을 제외한 사람들 뜻합니다.)(#3 Maintenance, management fees, usage fees of places, buildings, objects, etc. that are not directly used by the corporation and are mainly used by other people. Here, other people means people other than shareholders, executives with minority interests, and general employees.){ r%1-1<n>,e(2<n>,4<n>,5<n>)}

* + - * 1. [4](#1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2 회사 소유 주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3 Maintenance, management, and usage fees for company-owned residences)[n]

{1}(#1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2 주주(1%미만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나 출자자인 임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용하는 집의 유지비용, 관리비용,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비용 등을 말합니다.)(#3 Maintenance, management, usage fees, etc. of houses used by shareholders (excluding those holding less than 1%) or executives who are contributors, or their relatives, and expenditures related thereto){ r%1-1<n>,e(2<n>,3<n>,5<n>)}

* + - * 1. [5](#1 형법상의 뇌물)(#2 형법상의 뇌물)(#3 Criminal bribery)[n]

{1}(#1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게 대한 뇌물을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이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이 합계액)(#2 형법에 따른 뇌물(외국의 공무원에게 준 뇌물 포함합니다)으로서 주어진 돈이나 물건 등 경제적인 이익의 합계를 말합니다.)(#3 The sum of money, things, and other economic benefits given as a bribe under the Criminal Code (including a bribe to a foreign official)){ r%1-1<n>, e(2<n>,3<n>,4<n>)}

* + 1. [%9](#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법§28))(#2 이자비용의 비용 불인정)(#3 Disallowance of interest expense)[n]
       1. [1](#1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의 유형)(#2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자비용의 유형)(#3 Types of interest expense not recognized as an expense)[T,r%1-1<n>,e2<n>,e3<n>,e4<다만>,e5<n>,e6<n>,e7<n>]
          1. {1}(#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2 =빌려준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빚의 이자)(#3 =Interest on debts where the lender is unclear){n}
          2. {2}(#1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 =받는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3 =Interest on bonds and securities whose recipients are unclear){n}
          3. {3}(#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2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가액에 넣은 경우)(#3 =Interest on borrowings included in the value of assets under construction){n}
          4. {4}(#1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2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및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확정인 금전 지출 등에 대한 이자비용)(#3 =Interest expense on non-business assets and monetary expenditures whose transactions are unclear or unconfirmed){n}
       2. [2](#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2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가액에 넣은 경우)(#3 Including interest on borrowings in the value of assets under construction)[n]
          1. [3]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의미)(#2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가액에 넣은 경우의 의미)(#3 Meaning of including interest on borrowings to the value of assets under construction)[n]

{1}(#1 사업용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함)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합니다.)(#2 사업용 자산의 구매,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나 이와 비슷한 지출을 말합니다.)(#3 It refers to interest or similar expenditures on money borrowed for use in the purchase, production, and construction of business assets.){e1<n>,e2<n>,e4<다만>,e5<n>,e6<n>,e7<n>}

* + - * 1. [4]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제외사항)(#2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가액에 넣은 경우에서 제외되는 사항)(#3 Exclusion of interest on borrowings included in the value of assets under construction)[n]

{1}(#1 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합니다)(#2 빌린 돈이 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제외합니다)(#3 Exclude that it is unclear whether the borrowed money was spent on the construction of the asset){e2<n>,e3<n>}

* + - 1. [5](#1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2 일반적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3 Interest expense on general borrowings)[n]
         1. [6] (#1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의미)(#2 일반적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의미)(#3 Meaning of interest expense on general borrowings)[n]

{1}(#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합니다.)(#2 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말합니다.)(#3 It refers to interest expense on borrowings for which it is unclear whether they are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assets.){e1<n>,e2<n>,e3<n>,e4<n>,e7<n>}

* + - * 1. [7] (#1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자본화 선택)(#2 일반적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자산가액 포함)(#3 Include asset value for interest paid on general borrowings)[n]

{1}(#1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액도 자본화 선택이 가능합니다.)(#2 2010년12월30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 부터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건설중인 자산의 가액이 넣을 수 있습니다.)(#3 Effective for business years ending after December 30, 2010, interest expense on general borrowings can also be included in the value of property under construction.){e5<n>,e6<n>}

* + 1. [%9x1](#1 기타 손금불산입)(#2 그 밖에 인정되지 않는 비용)(#3 Other disallowed expenses) [n]
       1. [1] (#1 기타 손금불산입 대상)(#2 그 밖에 인정되지 않는 비용 대상)(#3 Subject of other disallowed expenses)[T,r%1-1<n>]
          1. {1}(#1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법법§23))(#2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가치 하락분 보다 더 많이 하락시킨 경우.)(#3 =Decrease in value by more than the maximum amount prescribed by law.){n}
          2. {2}(#1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법§24))(#2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에 대한 비용 불인정)(#3 =Disallowance of expenses for free donations unrelated to business) {n}
          3. {3}(#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법법§25))(#2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지출하는 금액의 비용 불인정)(#3 =Disallowance of expenses for amounts paid to others related to business) {n}
          4. {4}(#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법법§27의2))(#2 =업무를 위해 이용하는 회사 명의의 차량과 관련된 비용의 불인정)(#3 =Disallowance of expenses related to company-owned vehicles used for business) {n}
          5. {5}(#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 금액(법법§52))(#2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을 계산한 것을 무시하고, 법에서 정한 거래방식을 통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3 =Disregarding the calculation of tax through an abnormal transaction and recalculating tax through the transaction method prescribed by law) {n}
    2. [%10](#1 농어촌특별세)(#2 농어촌특별세)(#3 Special Tax for Rural Areas)[n]
       1. [1](#1 본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손금 및 손금불산입)(#2 본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비용 불인정)(#3 The non-recognition of expenses for the special rural tax)[n]
          1. {1}(#1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중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목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2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그 처리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세법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중 해당 세목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세목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3 Special Tax for rural Areas is a tax required to be paid under the Agricultural Special Rural Development Act, and i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If the Corporate Tax Act allows you to treat it as an expense, then you can also treat the portion of the Special Tax for Rural Areas that is based on that tax category as an expense. On the other hand, if the Corporate Tax Act does not allow to treat it is as an expense, the portion of the Special Tax for Rural Areas based on that tax category cannot be treated as an expense.){r%1-1<n>,e2<n>}
       2. [2](#1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세무조정))(#2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세금 계산용 수정 방법))(#3 $(Modification method for calculating taxes regarding Special Tax for Rural Areas))[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1<n>}

1. [%11](#1 예규)(#2 많이 물어보는 질문답변)(#3 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n]
   1. [1](#1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방법 및 임원상여금 손금여부)(#2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처리방법 및 임원상여금 비용처리 여부)(#3 How to treat insurance with no refund at maturity and expense for executive bonuses)[n]
      1. {1}(#1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서면-2020-법인-0953, 2020.8.28.))(#2 회사가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에게 객관적인 회사의 기준이 없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3 If the company pays bonuses to executives who are not general employees without an objective company standard or in excess of the standard, it cannot be treated as an expense.){r%1-1<n>,e%7-1<n>}
   2. [2](#1 지출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등)(#2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지출하는 금액인지 해당 여부 등)(#3 Whether the expense is for the other party is related to business)[n]
      1. {1}(#1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0-법인-1478, 2020.7.21.))(#2 판매나 영업을 대신하여 해주는 자에게 식대, 미리 약정된 성과보상금,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금액은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선물 제공 등의 지출은 접대비로 분류되어 법에서 정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Expenditures for meals, pre-arranged performance compensation, training expenses, meeting expenses, etc. to a person who performs sales or business on behalf of a contractor are deductible. However, expenditures such as providing holiday gifts are classified as entertainment expenses and are only deductible up to the amount specified by law.){r%1-1<n>}
   3. [3](#1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소급 지급하는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2 국내 회사가 임직원에게 소급해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비용처리 여부)(#3 Whether to treat tuition expenses paid retroactively by a domestic corporation to an employee)[n]
      1. {1}(#1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24, 2020.5.26.))(#2 국내 회사가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자녀 또는 본인의 학자금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하여 과거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3 Where a domestic company pays its children's or self's tuition expenses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regulations, and an employee applies retroactively for the payment of past tuition expenses in one lump sum, it shall be treated as an expense for the year in which the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 is confirm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r%1-1<n>}
   4. [4](#1 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2 추가로 정산한 건강보험료의 비용처리 여부)(#3 Whether to treat additional settlement health insurance premiums as an expense)[n]
      1. {1}(#1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를 이유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2019-법인-1513, 2020.3.20.))(#2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법인으로 이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 전환 전의 개인사업 영위 시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착오로 인해 법인 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 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If a private business owner converts to a corporation by transferring all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business to the corporation, the additional settlement health insurance premium notified to the representative after the conversion to a corporation due to an error in settle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incurr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ole proprietorship before the conversion to a corporation cannot be treated as an expense of the corporation.){r%1-1<n>}

<boe>